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최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00
----------	-------

발의연월일 : 2025. 8. 11.

발 의 자 : 최혁진 · 강준현 · 김우영
김재원 · 민형배 · 박정현
이수진 · 임미애 · 정을호
정혜경 · 진선미 · 허성무
의원(12인)

제안이유

본 법률안은 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과 밀접하게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간인 김충식과 관련된 중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을 독립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검사 임명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음.

현재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법률 제20988호)」은 김건희의 직접적인 비위 의혹 16개를 명시적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김충식에게 제기된 별도의 의혹들－예컨대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DMZ 개발 특혜 의혹, 정대택 사건 개입 및 사법부 유착, 초대형 마약 밀수 사건, 국정 개입 및 비선 실세 의혹 등은 그 수사 범위에서 제외되거나 사실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특히 김충식은 대통령 가족과의 사적 관계를 배경으로 국정 운영 및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선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입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적 기본 원칙을 훼손할 중대한 사안임. 김충식과 관련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위를 넘어 공공기관 유착, 권력형 카르텔, 사법농단 및 마약 범죄에 이르기까지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부패 의혹으로 확장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검찰이나 김건희 특검의 한계로 인해 김충식에 대한 수사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진다면 국민적 신뢰의 회복은 요원함. 따라서 김충식을 직접적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존 특검과 별개로 독립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광범위하고 중대한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본 법률안은 김충식과 관련된 중대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그 수사 범위 및 절차, 권한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1.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김충식은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빌미로 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카르텔 형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이 사건은 김건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가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 369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중대한 금융 범죄인바 김충식은 관련 기업들의 사업 구조와 정부 정책 사이에서 조율자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있음.
2. DMZ 개발 특혜 의혹: 김충식은 '나라사랑무궁화봉사회' 등의 단체 명의를 이용해 DMZ 접경지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토지를 특혜적으로 확보하고, 관련 규제를 우회하여 민간 개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특히 지역 관공서, 군부대, 국방부 일부 인사들과의 유착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개발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군사기밀 외부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국가안보와 국토계획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3. 정대택 사건 개입 및 사법부 유착 의혹: 김충식은 김건희의 모친 최은순과 내연 관계로 알려졌으며, 최은순과 오랜 민사소송을 벌였던 정대택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윤남근 전

판사와의 금전 거래 및 공동 부동산 투자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판결이 최은순에게 유리하게 나오도록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의 실현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구조적 비리로 대한민국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안임.

4. 초대형 마약 밀수 및 은폐 의혹: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약 300 kg, 시가 약 1조 7천억 원 규모의 필로폰이 국내로 밀반입된 사건과 관련하여 김충식 및 전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인천세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축소했으며,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섰던 경찰 간부(백해룡 경정 등)에게는 좌천성 인사와 감찰 등 보복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이 사건은 단일 마약 사건으로는 전례 없이 대규모일 뿐 아니라 최고 권력이 국가기관을 동원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점에서 ‘한국판 나르코스’로 불릴 만큼 중대한 사안임.

5. 비선 실세 및 국정 개입 의혹: 김충식은 최은순과의 친분을 기반으로, 김건희 및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비공식적 연계를 맺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일각에서는 ‘비선 실세’, ‘윤석열 정권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음. 특히 통일교 계열 단체들이 대통령실에

고가의 명품 등을 전달하며 각종 사업 청탁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김충식이 핵심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다수의 증언이 나온 바 있음. 이러한 정황은 단순한 개인 비위 차원을 넘어 민간인이 국가 정책 및 예산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국정 농단 사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6. 문화재 반환 과정의 불법 외교 개입 의혹: 김충식은 외교부 인가 사단법인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회(ECI)의 등기이사로 재직하면서 일본 덴리대학이 소장한 문화재인 '몽유도원도'의 국내 반환 활동을 주도한 바 있음. 이 과정에서 일본 황실 및 외교 네트워크를 사적으로 활용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칼과의 교환을 제안하는 등 정상적인 외교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는 외교 주권의 침해이자 공공 외교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

7. 사건 관련 2차 범죄(은폐, 방해 등): 김충식과 관련된 주가조작, 사법 유착, 마약 밀수 사건 등에서 핵심 인물들의 도주, 증거 인멸, 수사 방해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음. 특히 주요 인물들의 해외 도피 시도, 법원 출석 불응, 수사 자료 폐기 등의 행위는 수사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중대한 2차 범죄에 해당함.

8. 기타 수사 중 인지된 관련 범죄: 위 사건들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되는 범죄 행위, 예컨대 허위공문서 작성, 탈세, 정치자금법 위반, 위증 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도 본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에 포함됨. 이는 수사의 확장성과 체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임.

이처럼 본 조항은 김충식을 중심으로 한 권력형 비리 의혹의 핵심 축을 포괄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망 회피 및 사안 축소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적 의혹을 전면적으로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가짐. 수사 대상의 명확한 열거와 구조적 범죄에 대한 범위 지정은 실효성 있는 특별검사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적 전제가 될 것임.

김충식 관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민간인 김충식이 상장회사 및 비상장회사(주식회사 삼부토건, 주식회사 도이치모터스 등)의 주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정부 정책을 사적 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의혹 사건
2. 김충식이 '나라사랑무궁화봉사회' 등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DMZ 접경지역 내 토지를 확보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회피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군 관련 공공기관과 유착하여 특혜성 개발을 추진하였다는 의혹 사건
3. 김충식이 정대택과 최은순 간 민사소송에 개입하여 담당 법관인 윤남근 전 판사 및 그 가족과의 금전 거래 또는 부동산 공동 취득 등을 통해 재판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사건

4. 김충식이 연루된 약 300kg 규모의 필로폰 밀반입 사건 관련하여 인천세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수사를 은폐 또는 축소하고, 수사에 관여한 경찰 간부 등에 대해 좌천성 인사 및 감찰 등 보복 조치를 하였다는 의혹 사건
 5. 김충식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모 최은순과의 사적 연계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및 행정 결정에 개입하고, 건진법사, 통일교 등 특정 종교 또는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청탁을 받은 방식으로 이권에 개입하였다는 의혹 사건
 6. 김충식이 사단법인 세계경제문화교류협회(ECI)를 통해 일본 황족 및 특정 외교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일본에 소재한 국보급 유물인 '몽유도원도'를 사적으로 교환하거나 국내 반입 조건으로 특혜를 요구하였다는 의혹 사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 도주·은닉, 범죄 은폐, 증거 인멸, 수사 및 재판 방해 등을 하였다는 의혹 사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
- ② 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여야 한다.
- 제3조(특별검사의 임명) ① 국회의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

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국회의장이 지체 없이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는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을 각 1명씩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추천받은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이 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추천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

를」에 따라 임명되어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는 제외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및 검사의 직에 있었던 자

4.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6.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조(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다만, 공소유지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인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도 포함한다.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대통령경호처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른 공소유지의 경우 담당 검사 등은 즉시 사건을 인계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거나 사본제작 및 자료 제출을 받을 수 있다.

1.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2. 관할 지방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한 경우

⑤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4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80명 이내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1명 이상 파견받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7조(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 ① 특별검사는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7년 이상 있던 사람(「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위 중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중에서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4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한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8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특별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8항을 각각 준용한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특별검사등의 의무) ①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이하 “특별검사등”이라 한다)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1조, 제12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⑤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

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

제9조(수사기간 등)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하여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인계받은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다.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재판기간 등)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11조(사건의 처리보고) 특별검사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등)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퇴직 등)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퇴직할 수 없으며,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 특별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

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특별검사등은 제11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3.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4. 제8조제5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후단을,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신분보장)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보고 등)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재판권 및 재판관할) ①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과 공소유지를 위하여 이첩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

② 이 법에 따라 특별검사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한 사건의 경우 제1심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특별검

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 시정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① 이 법의 범죄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에게 그 사건과 인력을 인계한다. 이 경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파견받은 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한 정원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과 그 법에 의하여 파견받은 공무원을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조제1항 각 호에 명시된 수사대상에 대하여 「특별검사의 임

명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명된 다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때에는, 특별검사 상호 간 협의하여 관할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벌칙)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2조(벌칙)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5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9조제7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공소시효의 정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제9조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날까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